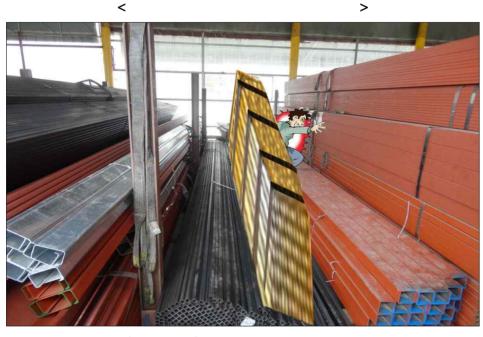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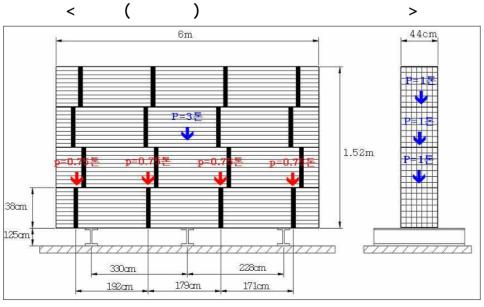
# 적재된 철강다발이 무너지면서 깔림

## 재 해 개 요

경기도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통행로에 4단으로 철강다발을 적재하고 무너지거나 떨어질 위험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1단(최하단)을 묶은 베일포장(철밴드)이 파단되어 1단 위에 적재된 2~4단 철강다발이 무너지면서 그 주변에서 작업하던 피재자가 철강다발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.

## 재 해 사 진





-1

# 재해발생 원인(추정)

#### 작업장 통행로 상에 장애물 적재

- 근로자가 수시로 통행하는 작업장 통행로 상에 무너지거나 떨어져서 다칠 수 있는 장소에 철강다발을 적재

#### 철강다발 붕괴 등의 위험방지조치 미실시

- 철강다발을 적재하고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이 상존해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미실시

### 동종재해 예방대책

#### 통로의 설치(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22조)

- 작업장 통행로는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높이 2m 이내에는 장애물(철강다발 등)이 없도록 유지

# 하적단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(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92조)

- 철강다발의 붕괴 또는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(로프로 묶거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버팀대 등을 설치) 실시
- 철강다발을 다단 적재할 경우 베일포장의 허용강도를 초과해서 적재하지 않도록 조치(과적재 금지)
- 철강다발을 다단 적재할 경우 각각의 단 사이에 받침목(균일한 크기와 단단한 재료)을 받혀놓고 적재하여 편심 적재되지 않도록 하고 수평을 유지하여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조치